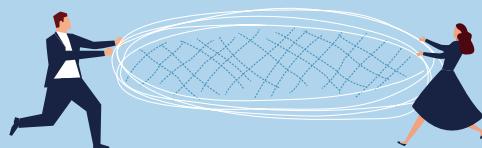


www.mpm.go.kr

든든하게 지켜주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안내서



인사혁신처

도드는하게 지켜주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안내서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선 서 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말씀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하겠습니다.

–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모두 발언(2019.6.7.) –

본 책의 구성

본 안내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 징계 또는 소송 등의 부담을 지게 된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제1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제2장 「적극행정 감사면책」, 제3장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4장 「법적조력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에서는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제도를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적극행정 감사면책」과 제3장 「적극행정 징계면제」에서는 감사 및 징계단계에서의 적극행정 면책 · 면제 제도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 및 신청 · 처리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면책·면제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담았습니다. 다만, 면책 · 면제의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법적조력 지원 등」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나 민사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CONTENTS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 | | |
|----------------------------------|----|
| 1. 적극행정은 시대적 요청! | 10 |
| 2. 확실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11 |
| 3. 감사 · 징계 · 소송 각 단계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 13 |



적극행정 감사면책

- | | |
|---|----|
| 1. 적극행정 감사면책은 무엇인가요? | 21 |
| 2. 누가 감사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22 |
| 3. 어떻게 신청 · 처리하나요? | 32 |
| 4.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는 무엇이며, 그대로 따른 경우 감사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38 |
| 5. 적극행정위원회 면책건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 42 |



03 CHAPTER

적극행정 징계면제

- | | |
|--|----|
| 1. 적극행정 징계면제란 무엇인가요? | 51 |
| 2. 누가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2 |
| 3. 어떻게 신청 · 처리하나요? | 58 |
| 4.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61 |
| 5. 고도의 정책적 시안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담당자)도 징계를 받나요? | 63 |

04 CHAPTER

법적조력 지원 등

- | | |
|--------------------------|----|
| 1.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 69 |
| 2.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확실히 보호합니다. | 75 |
| 3. 구상권 행사도 자제합니다. | 80 |

01

CHAPTER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
01. 적극행정은 시대적 요청!

—
02. 확실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03. 감사 · 징계 · 소송 각 단계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시대적 요청!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현장과 법·규정 간에 발생하는 괴리는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뒤쳐질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는 업무행태로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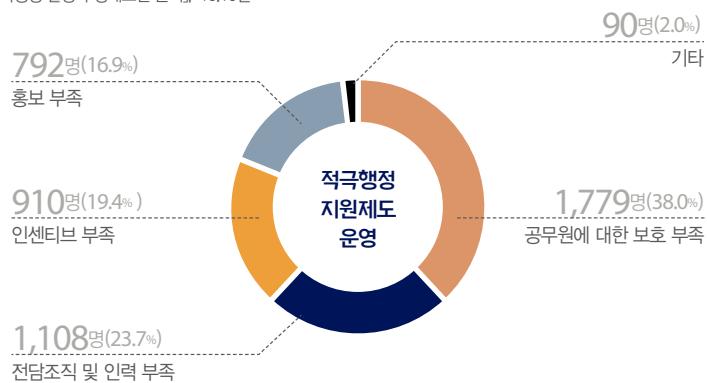
확실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나중에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감사나 징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징계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 10월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총 670개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38%의 응답자들이 면책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공무원에 대한 보호 부족’을 꼽았습니다.¹⁾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출처 감사원,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19.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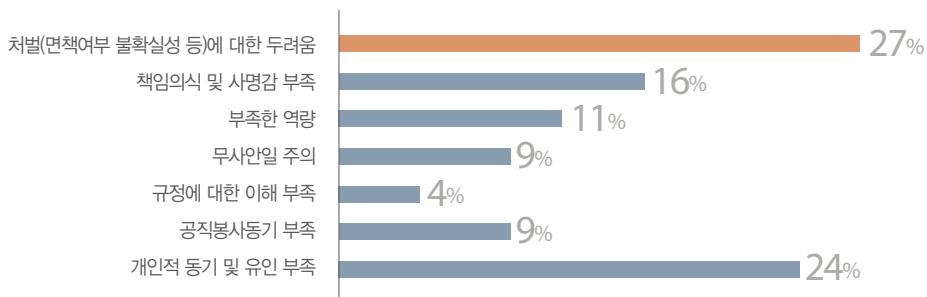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0개 기관의 실무자(감사, 기획, 사업, 정책 및 지원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19.6.20~27), 응답자 수 : 2,967명(복수응답수, 총 4,679명)

공직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이 느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적극행정 활성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인식(2차 조사)

 출처) 감사원,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19.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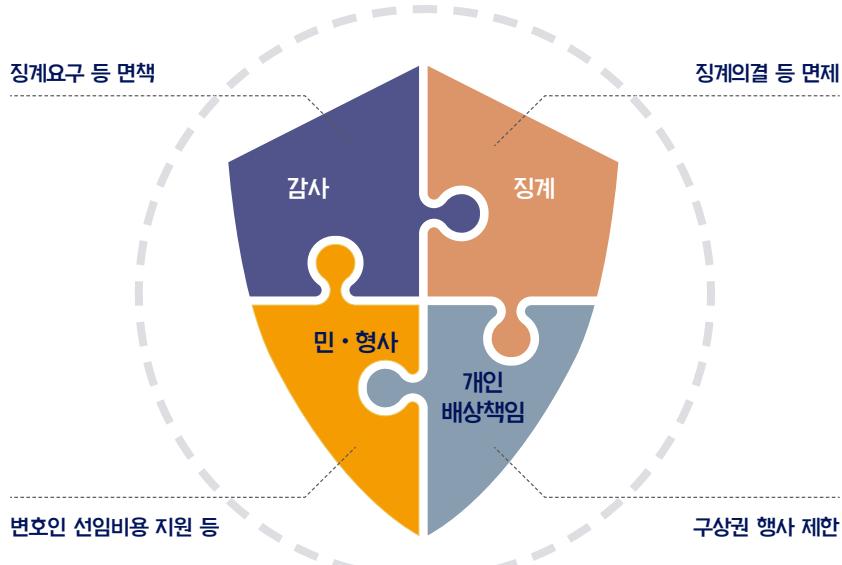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감사나 징계를 받느니 아예 가만히 있자는 관행적·소극적인 업무행태가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려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확실하고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적극(소극)행정 관련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을 개인적·제도적·조직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 실시 (개방형 설문(1차 조사, 18명) 및 폐쇄형 설문(2차 조사, 15명))



감사 · 징계 · 소송 각 단계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면책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사단계에서 감사원 등이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사전에 요청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사전에 감사기구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감사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징계면제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극행정의 결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이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적조력 지원 등

징계단계에서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소명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기관별로 자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검찰청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을 결정할 때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제도 활용(예시)



예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는 상황 발생**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같은 혜택(건강보험, 진료비지원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나, 향후 감사나 징계 시 문제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적극행정,
나중에도
걱정 없습니다!

감사단계 면책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단계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시 면책요건 충족 추정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면책요건 충족 추정



기관 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

예시 ○○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부여가 가능한지 안건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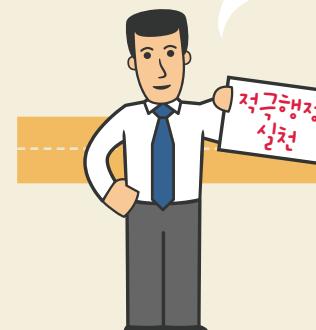
기관 내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신청

예시 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생활보호센터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요청

*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실제조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 부여



징계단계 면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단계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 면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면제 요건 충족 추정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면제 요건 충족 추정

법적조력 지원 등

소송 등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서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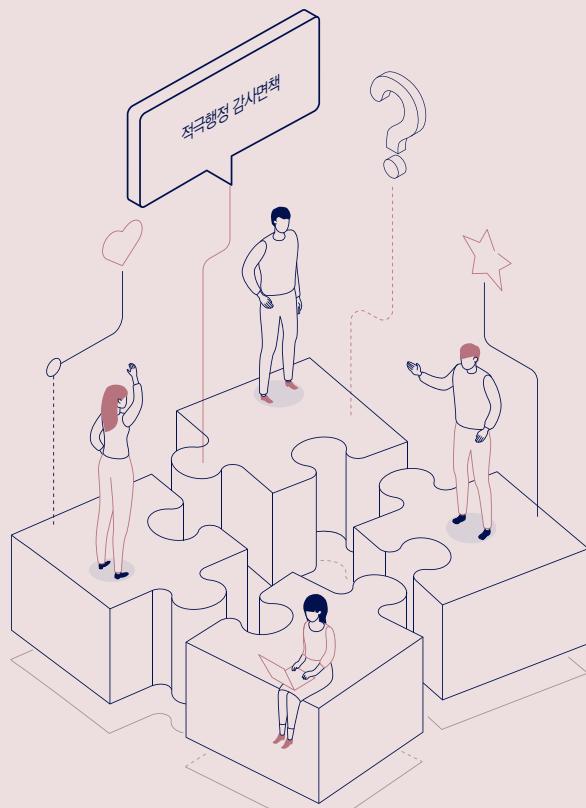
✓ 공무원 책임보험

✓ 구상권 행사 제한



02

CHAPTER



적극행정 감사면책



적극행정 감사면책

—
01. 적극행정 감사면책은 무엇인가요?

—
02. 누가 감사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03. 어떻게 신청·처리하나요?

—
04.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는 무엇이며, 그대로 따른 경우
감사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05. 적극행정위원회 면책건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CARTOON

만화로 보는 적극행정 감사면책



* 불문 : 청문요구를 하지 않는 것



01

적극행정 감사면책은 무엇인가요?

적극행정 감사면책 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감사 단계에서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감사원법」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절차는 감사원 규칙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법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물지 아니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물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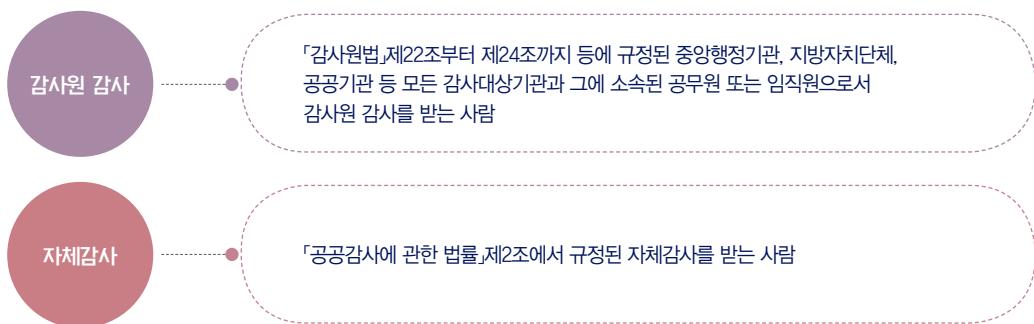
-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물지 않는다.



누가 감사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면책대상 범위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모두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며, 면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면책요건



적극행정 감사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공익성), ②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적극성),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 장부터 기준별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공익성)

공익성을 판단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한 업무 자체가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이나 방식의 의도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문제상황

A군은 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레저시설) 사업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A군은 사업지연 등을 우려하여 부득이 분납을 허용하였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감사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낙후지역에 이용객 등이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업체에만 협의기간 연장,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분양주택 매입



문제상황

A공사는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매입공고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등급별 협의 매입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직상위등급의 협의매입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협의기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6개 업체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던 A공사는 2개 업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지만, 4개 업체와는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결렬된 4개 업체 중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연장된 협의기한까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협의를 진행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책 인정여부

A공사는 저렴한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유로 적극행정 감사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특정업체와만 재협상을 하고 매입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지 못하였고,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문책요구' 되었습니다.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적극성)

적극성이란 공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사 실시



문제상황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結露)가 발생하여 철도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이용객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감사원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보고한 후 내부 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결로 해소 공사를 추진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는 모든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 ·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 질의 회신 및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문제상황

A시는 행정재산인 농산물도매시장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로부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시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만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하면 도매시장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도매시장을民間에 매각하였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A시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유사사례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주무부처 질의회신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 되었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①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

감사를 받는 자가 직접 수혜의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인정

**문제상황**

A공사는 유럽국가에 대한 주식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배당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선정 절차 진행 중 B업체에 3일을 기한으로 정량평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자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뒤에 당초 정성평가 점수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점수를 조정하여 당초 1위였던 B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였던 C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감사원은 국내 국가자금 운용기관 중 A공사가 처음으로 유럽국가에 대한 배당세액 환급신청 업무를 시도하면서 국가와 공사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되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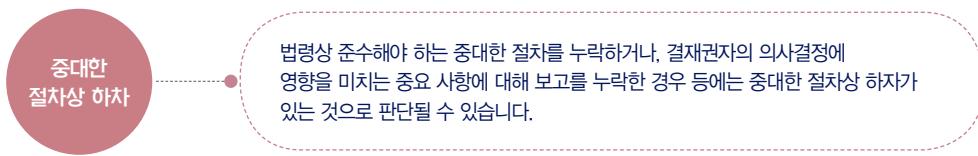
문제상황

A군 계약담당자 000은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수기 납품업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의 명의로 계약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에 6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서류를 제출하자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담당자는 도서(島嶼)로만 형성된 A군이 재해에 취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양수기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고의성이나 금품수수 정황이 없다며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품수수 정황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나, 지인으로부터 계약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 되었습니다.



세관장 협의 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인정



문제상황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입주허가 시 「양허물품 취급업종」은 관할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시는 관할 세관장과 협의 절차 없이 양허물품 취급업종을 영위하는 C조합법인의 B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가 하였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감사 결과, 장기간 미분양 상태이던 항만 배후단지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관할 세관장 업무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할 세관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고 입주기업 심사 시 세관 관계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업체에 현재 관세가 부과되어 있어 관할 세관장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 – 관세의 부당감면 · 면제 방지 – 도 총족하고 있으므로 회복 가능한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문제상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보존·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계획을 승인 또는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도는 산하 시·군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존·생산관리지역 24개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B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구역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5개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B환경청장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책 인정여부

A도는 산하 시·군 공무원들이 B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B환경청에서 이견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내오지 않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산하 시·군 공무원들이 B환경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환경청으로부터 추가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회신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 · 처리하나요?

자체감사의 경우

1 면책신청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
|---|-------|---|
| 대통령령 제30833호 | | |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
|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
| 4. 기타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기관(부서)명 | 직명 | 성명 |
| 감사기구의 장 귀중 | | 년 월 일 |

2

면책여부 검토 · 통보

면책신청을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합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리고,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도 알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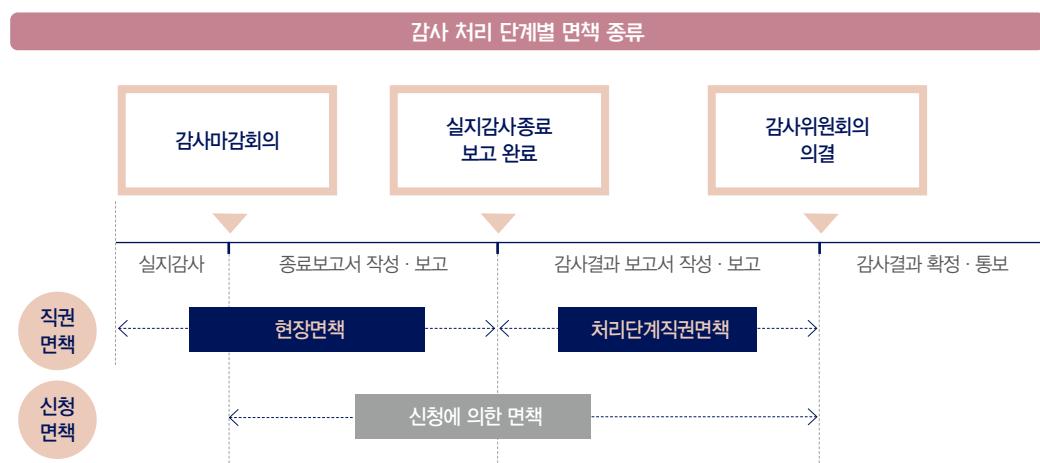
그 밖에 세부절차는 자체감사기구가 각각 자체 훈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면책의 요건을 검토하여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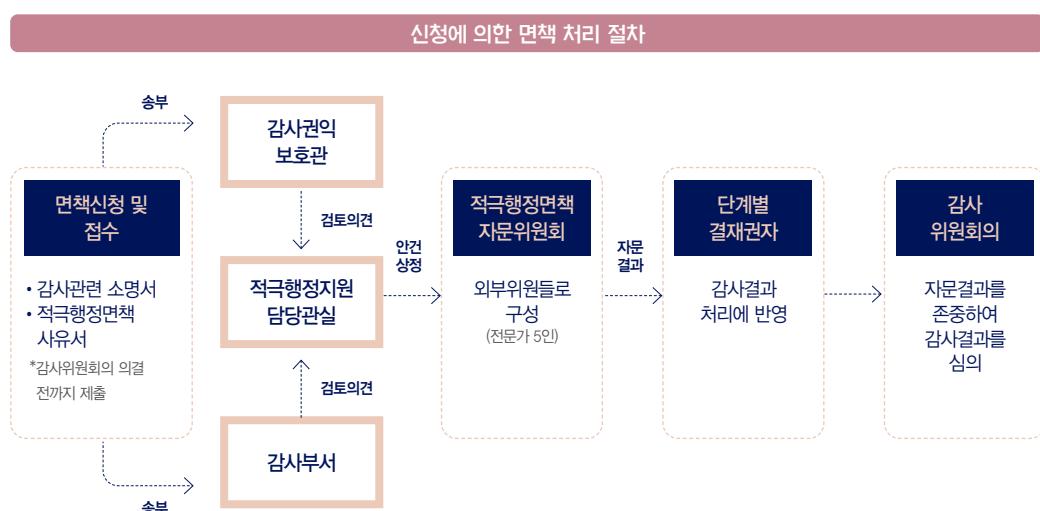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의 적극행정 면책은 면책신청 여부에 따라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과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청에 의한 면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책신청 · 접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 면책 사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감사원 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면책신청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별지 서식) | | |
|---|-------|------|
| 감사 관련 소명서 | | |
| 1. 제출자 | 주 소 | |
| | 기 관 명 | 직 명 |
| | 성 명 | 전화번호 |
|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 | |
| 2. 소명자료 관련 감사 사항명 및 자적간명 (예시) ○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가설치공사 계약 관련) | | |
| 3. 소명자료제출 취지 (해당사유 모두 표시) 사실관계 성이() / 새로운 증거() / 법령해석 차이() / 적극행정면책() / 정상참작 등 기타() | | |
| 4. 소명 요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 | |
| 위 감사 및 자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1. 대리인 위임장 2. 소명자료(예)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원 귀중. | | |
| <small>※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small>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내용 및 자적간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자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감사 관련 소명서>

| (별지 서식의 별첨 1) | | |
|--|----------------------|----------------------|
|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 | |
| 적극행정면책 요지 | | |
| 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
|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 |
|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중대한 절차상의 허자 존재 여부 | |
| ○ 기타 | | |
| <small>*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small> | | |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QR코드에 접속하시면 감사원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감사원은 면책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향후 진행절차와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감사원 홈페이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진행상태 조회)에서 검토단계별 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감사권익보호관, 감사부서 검토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은 접수한 면책 신청서를 감사권익보호관과 해당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각각의 검토 의견을 취합한 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단, 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 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와 ‘적극행정 면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검토

감사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상정된 면책신청 안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합니다.

4 단계별 결재권자 검토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가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단계별 결재권자 또는 주심 감사위원(주심 감사위원 검토단계에서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게 자문 결과를 송부합니다.

5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 결과를 심의합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아 면책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 요구를 한 경우나 면책 사유를 인정하여 감경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 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합니다.

참고

현장면책 신청 · 처리 절차

1 감사 척수 시 안내

감사원은 감사 척수 전 실지감사통지서에 다음 안내문을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

실지감사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여부 검토 요청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행한 업무 중 감사 현장에서 감사자가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 1) 감사자가 조사하는 사항의 요지 2)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

^{*} 감사단장이 실지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처리방향 등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3 감사단 검토

- 감사단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면책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면책 요건 총족 여부를 검토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별도 검토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적으로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항도 현장면책 가능

4 면책여부 결정 · 통보

- 감사단 검토 결과, 소명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알리고 공문으로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면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 여부를 계속 검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 즉시 감사를 받은 기관에 면책 결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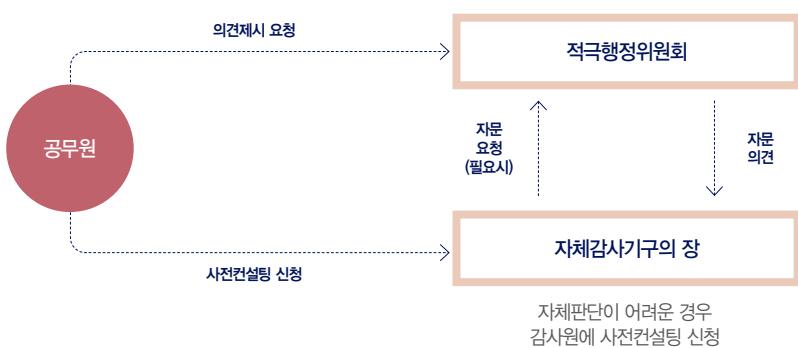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는 무엇이며, 그대로 따른 경우 감사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여도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감사나 징계 위험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구(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와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가 그것입니다.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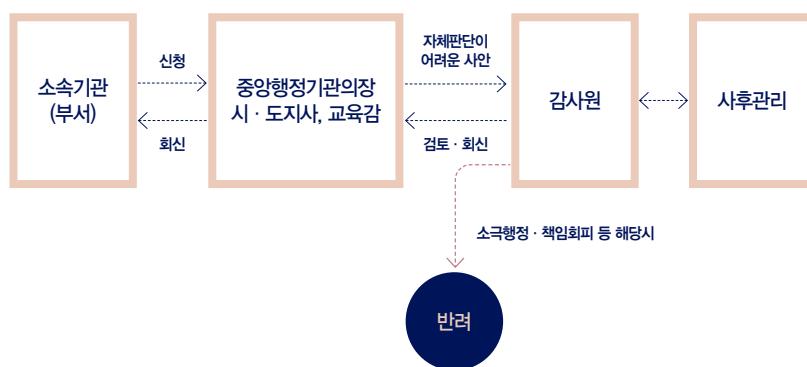
1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고, 감사기구가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는 기관(부서)은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운영 절차



2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19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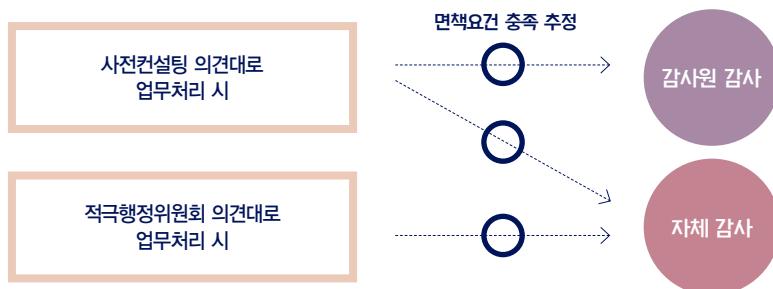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면책 요건충족 추정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사후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에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사후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운영규정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추정 배제 사유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면책 검토 사안이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안과 동일하지 않거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과 달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제공의 충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도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왜곡·은폐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충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사안의 동일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정보제공의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받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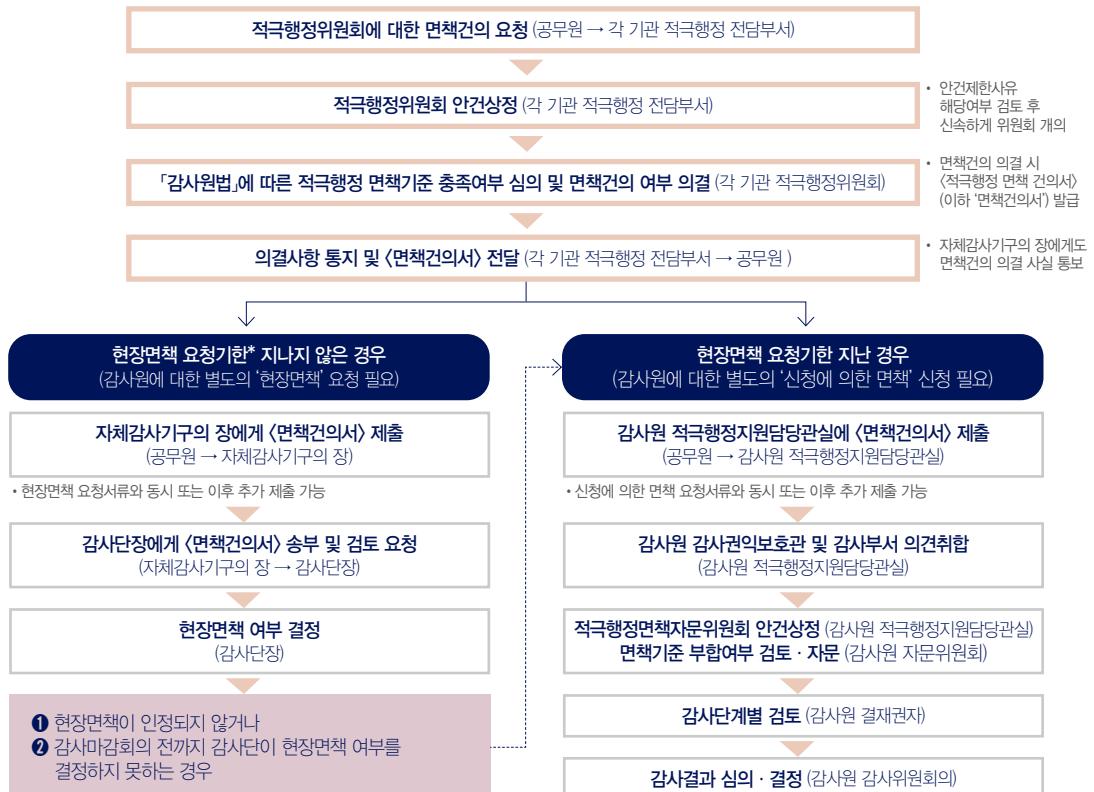
✓ 사적인 이해관계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적극행정위원회 면책건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20.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적극행정 위원회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면책건의 제도 신청 · 처리 절차



* 현장면책 요청기한 :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1.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한 면책건의 요청 · 처리

1 면책건의 요청 및 안건상정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각 기관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요청을 받은 전담부서는 안건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 상정안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된 경우, 기타 「감사원법」상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2 면책건의 심의 · 의결

- 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일정 및 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개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서면회의 방식 등의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②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체감사기구의장을 회의에 참여시켜 그 의견을 청취합니다.
- ③ 적극행정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감사원법」제34조의3 등에 규정된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책건의를 의결합니다.

*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②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결과, ③ 고의 · 중과실이 없을 것 등

- ④ 면책건의 의결 시 <적극행정 면책 건의서>(이하 '면책건의서')를 발급합니다.

3 결과통보 및 <면책건의서> 전달

- ① 전담부서는 의결 즉시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하여 줍니다. 면책건의 의결 시에는 <면책건의서>를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도 면책건의 의결 사실을 알려 줍니다.

2-1.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

감사원에 대한 제출

- ① 감사단장에게 ‘현장면책’을 요청한 공무원은 감사마감회의 3일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건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②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합니다.

2

감사원의 처리

- ① 감사단장은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책결정 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합니다.



현장면책 처리절차

1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 검토 요청서〉를 작성

2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장을 거쳐 감사단장에 제출

3 감사단 내부회의 거쳐 면책 여부 결정

2-2. 현장면책 요청기한이 지난 경우

1

감사원에 대한 제출

- ①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이하 ‘지원담당관실’)에 ‘신청에 의한 면책’을 요청한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3일전까지 같은 부서에 〈면책건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사원의 처리

- ① 지원담당관실은 〈면책건의서〉 등이 접수된 시점에 따라 ‘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 단계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및 해당 감사부서는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 시 <면책건의서>도 검토합니다.
- ③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심의하면서 <면책건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 ④ 자문위원회가 끝나면 지원담당관실은 자문결과가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단계별 결재권자 또는 주심 감사위원에게 자문결과를 송부합니다.
- ⑤ 감사위원회에서는 <면책건의서>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고려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하고, 면책결정 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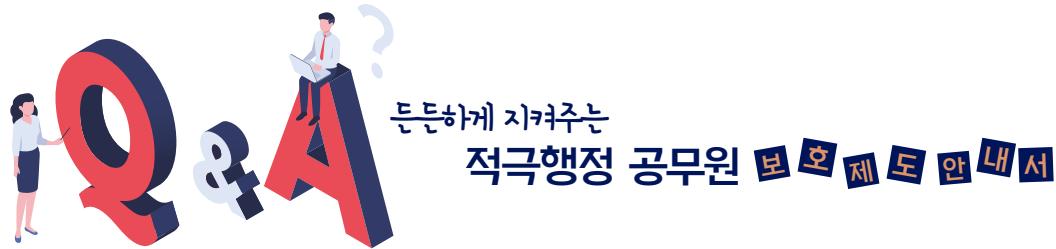
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절차

- 1 공무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 <적극행정 면책 사유서>를 작성
- 2 감사위원회의 3일 전까지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제출
- 3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감사결과 결정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1

감사원의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나
적극행정
면책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요?

A

감사권익보호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률·행정·기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갖춘 사람 중 감사원장이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며, 적극행정면책 신청 사건이 면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감사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합니다.

2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면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된 처분요구 등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재심의제도란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

재심의 청구는 처분요구서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청구 가능합니다.(단, 변상판정은 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3

현장 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은
면책 신청할 수
없나요?

A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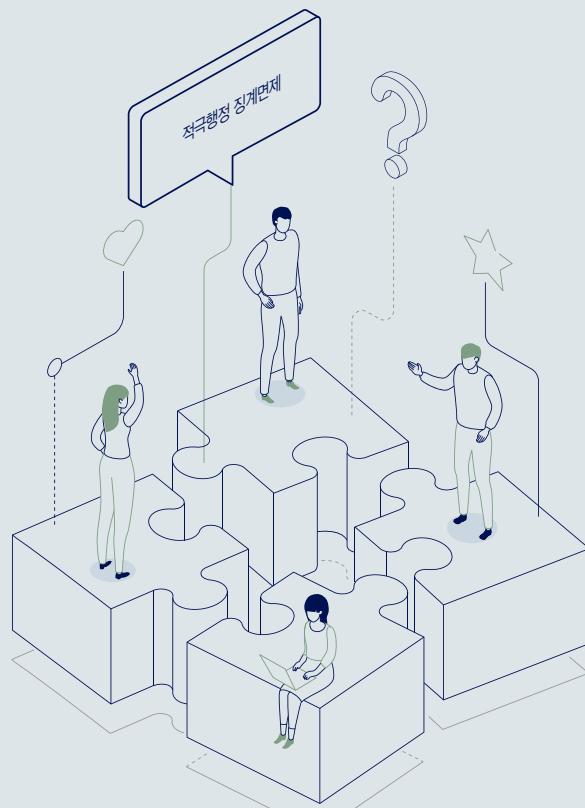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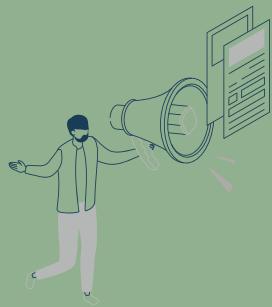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는 그 신청주체 및 대상업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감사원 사전컨설팅 |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
|-------|--|--|---|
| 신청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 공무원 |
| 대상업무 |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 근거 규정 | 『감사원법』 제30조의2,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등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등 |

03

CHAPTER





적극행정 징계면제

—
01. 적극행정 징계면제란 무엇인가요?

—
02. 누가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03. 어떻게 신청·처리하나요?

—
04.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경우에는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05. 고도의 정책적 사안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담당자)도 징계를 받나요?

CARTOON

만화로 보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적극행정 징계면제란 무엇인가요?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누가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범위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징계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적용대상 범위

-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적용대상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 공무원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기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기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기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기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면제요건

적극행정 징계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면책 요건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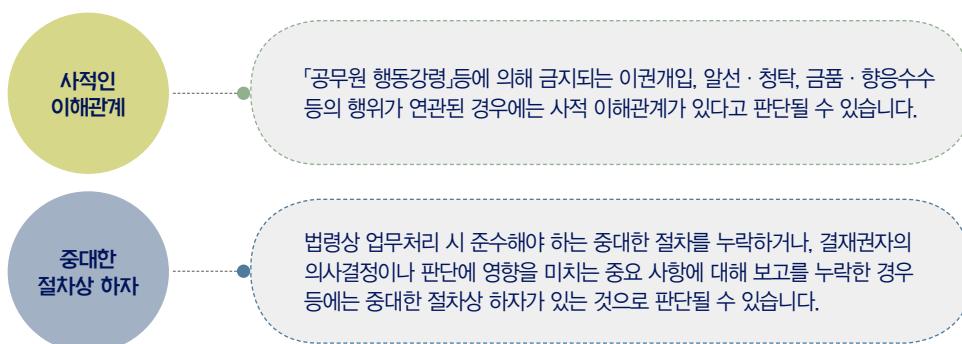
징계대상이 된 사람이 담당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 등이 국민 편의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⑦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⑧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 대신
대금감액 조정방법 제시




문제상황

A기관은 B기관 및 C업체의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C업체와 '침수경고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기관은 C업체가 다른 D업체로부터 받는 기술지원이 미약하여 용역을 완벽히 완료하기 어렵고, 계약이행과 관련한 3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기관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A기관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였고, B기관이 제기한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워 추가조사 등을 통해 C업체가 D업체로부터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대금감액 조정이라는 중재방법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면제 인정여부

관할 징계위원회는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개발·시험운행 일정이 지연되어 우기(雨期) 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이 명백하여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B기관이 제기한 사유만으로 계약해지가 어렵고, 소송발생 시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감안한 점이나 D업체로부터의 기술지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중재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징계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징계가 면제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용역 의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지연



문제상황

공무원 A는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외주용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계예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예산부서에 예산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사전절차도 밟지 않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체에 구두로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A는 해당 공공시설 보수공사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면제 인정여부

관할 징계위원회는 A의 주장과 같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서 외주용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후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징계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도
궁금하신가요?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사례집」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로
접속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 · 처리하나요?

적극행정 징계면제 신청

인사혁신처는 '19. 8월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대상자가 된 공무원은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 서식] | | | |
|---|-------------------------------|----------|--------------------|
| 대통령령 제30878호 | | | |
| 의 견 서 | | |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 |
| 의견 | | | |
| 징계등 면제 사유 | |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 | | 작성인 성명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 징계위원회 귀중 | |

적극행정 징계면제 심의 · 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내용이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령 제30878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
| 이유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 |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 | |
|---|---|
|  <p>적극행정 운영규정</p> | <p>제17조(징계 등 면제)</p> <p>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
|  <p>공무원 징계령</p> | <p>제11조(심문과 진술권)</p> <p>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p> <p>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경우에는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면제합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면제합니다.

다만, 감사면책과 마찬가지로 ①징계면제 검토 사안이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를 신청한 사안과 동일하지 않거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과 달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②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③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확인해보세요!

C H E C K L I S T

- ✓ **사안의 동일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 **정보제공의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받았는지
- ✓ **사적인 이해관계**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협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협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도의 정책적 사안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담당자)도 징계를 받나요?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의 경우, 실무직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무직(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판단·자료오류 등 실무자의 업무권한 범위 내 사항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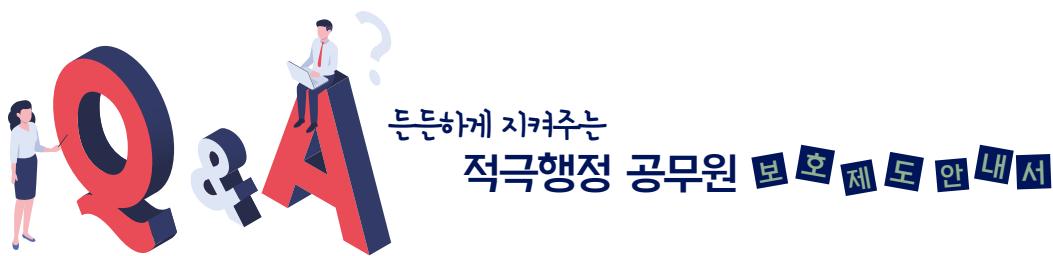
| | | | 업무 관련도 | 비위 행위자 (담당자) | 직급 상급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
| |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
| 정책결정사항 | 정부의 성질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 | | 일반적인 사항 | | 3 | 1 | 2 | 4 | |
| | | 중요 사항 | | 1 | 2 | 3 | 4 | |
| 단순 · 반복 업무 | | 경미한 사항 | | 1 | 2 | 3 | | |
| | | 단독 행위 | | 1 | 2 |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극행정 징계면제
신청한 사안을 제대로
심의해줄까요?

A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4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감경 · 면제
건의제도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감경 · 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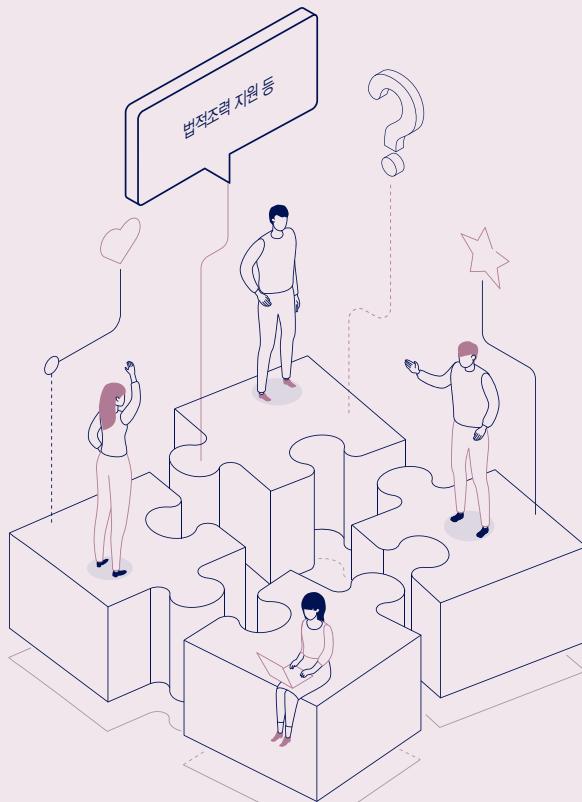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 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의 대상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감경 ·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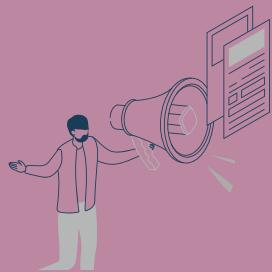
04

CHAPTER

유의하세요

본 정(章)은 법무부·인사혁신처의 '지침(안)'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내용 및 절차는 각 기관별 자체 규정 및 세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조력 지원 등

—
01.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
02.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확실히 보호합니다.

—
03. 구상권 행사도 자제합니다.

CARTOON

만화로 보는 법적조력 지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도입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소명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9. 9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지침(안)」을 수립 · 배포하였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 또는 징계에서의 책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소 · 고발되는 경우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가 '19. 8월 배포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안)」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 |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지원내용

1 변호인 ·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아 소명이 필요하거나, 고소 ·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소송에 피소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절차 | 고소 · 고발 등 | 민사소송 |
|----------------|------------------------------------|--|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함)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대법원규칙 제2936호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frac{10}{100}$]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frac{8}{100}$]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frac{6}{100}$] | 6%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frac{4}{100}$]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frac{2}{100}$]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frac{1}{100}$] |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frac{0.5}{100}$] | 0.5% |

사안에 따라 위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란?

- ◎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이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별 「적극행정 위원회」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자체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중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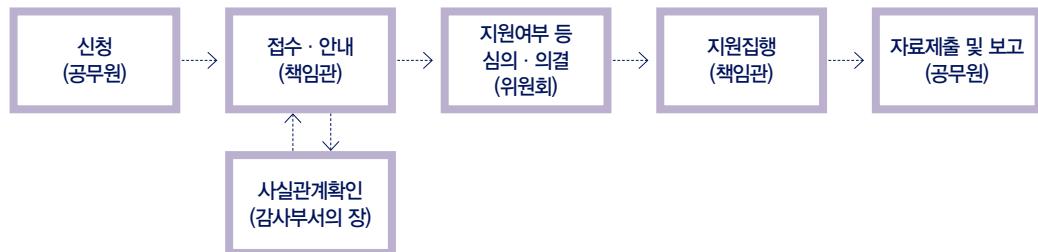
1. 관할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3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된 기관의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 신청서>와 기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담당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
| | | | | | | |
| | 담당업무 | | | | | |
| 신청내용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 | | | | |
| 징계의결 요구 개요 | 징계의결 요구 <table border="1"> <tr> <td>요구일</td> <td>관할 징계위원회</td> </tr> </table> | | |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 | |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 | | | | |
| 구비서류 |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서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서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 | | | | |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하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구가 마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 ○○○ (인) | | | | | | |
| ○○○기관장 귀하 | | | | | | |

<징계절차>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담당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 | | | |
| | 담당업무 | | | |
| 신청내용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 | |
| 시간번호 | 고소·고발 등 |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
|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사건개요 | | | | |
| 구비서류 |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서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서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 | | |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하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구가 마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 (인) | | | | |
| ○○○기관장 귀하 | | | | |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

2**지원절차 안내**

지원신청을 받은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사실관계 확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지원 신청을 받은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에 관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적극행정 책임관은 신청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합니다.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여부·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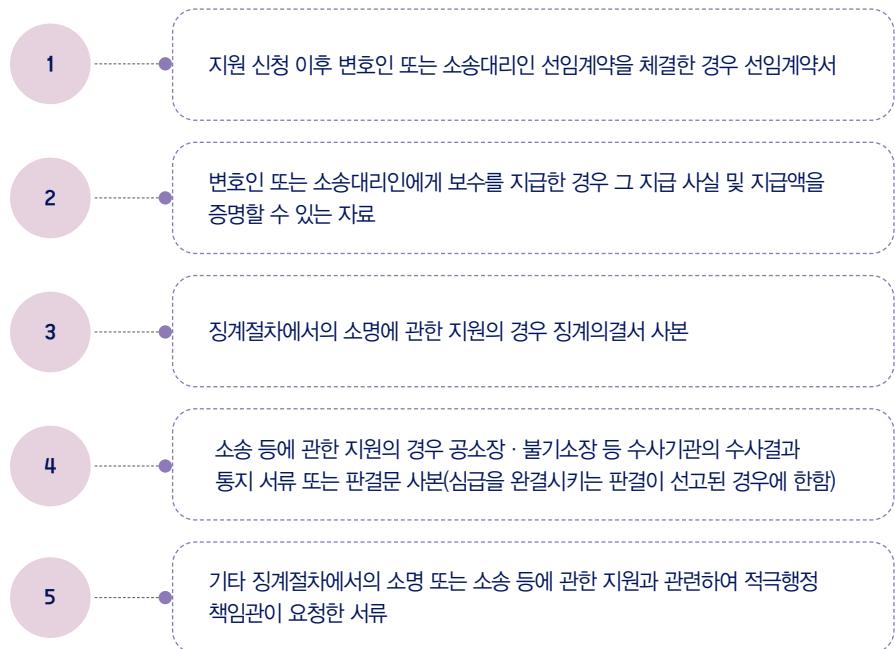
5**심의결과 통보·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6

자료제출 및 보고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받은 공무원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확실히 보호합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의 도입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면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보다 확실하게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9. 11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공무원 책임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계약 체결의 효율성 제고 및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기존 공무원 생명·상해 보험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발주하고,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44개 부처에서 28만 4천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주요내용

1

보장하는 사고

공무원의 공무 수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하는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예) 행사를 개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행사장에서 설치물로 인해 다친
민원인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2

보장하는 금액

민사사건의 경우, 하나의 사건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나의 사건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사단계와 형사소송 각 심급별 75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1인당 연간 최대 3건의 사건(총9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책임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
- 소급담보일('20년의 경우, '15.1.1.)이전에 수행한 직무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
- 공무원의 유죄로 확정된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
- 공무원이 가입한 다른 의무보험(자동차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형사소송 및
수사의 경우

- 죄목에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대범죄 죄목*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등

* 내란·외환·국교·공안·폭발물·통화·유가증권·살인·강도·절도·유기·학대·
아동에 관한 죄, 성폭행·사기·공갈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내용(요약)

| 구 分 | | | | 보 장 | | | |
|------------------|----|----------|------|-------------|----------------|--|--|
| 보 장 범 위 | 민사 | 경과실 | 소송비용 | 1건당 3천만원 한도 | | | |
| | | | 손해배상 | | | | |
| | 형사 | 고의 · 중과실 | 소송비용 | 미보장 | | | |
| | | | 손해배상 | | | | |
| 무죄 | | | | 기소 전 | 방어비용 750만원 | | |
| | | | | 기소 후 | 소송비용 심급별 750만원 | | |
| | | | | 유 죄 | 미보장 | | |
| 보장횟수 | | | | 1인당 연간 3회 | | | |
| 소급담보기간 | | | | 5년 | | | |
| 보험금 지급 시기 | 민사 | | | 보험금 청구 시 | | | |
| | 형사 | 기소 전 | | 보험금 청구 시 | | | |
| | | 기소 후 | | 무죄 확정 후 | | | |

보험금 청구 절차

- ① 수사 또는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여 상세 절차를 안내 받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20년 공무원 책임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02-3701-8825)



- ② 소송 등을 당한 내용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각 부처(또는 각 지방청) 공무원 책임보험 담당 부서에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각 부처 담당부서에 문의

- ③ 보험사 협의 하에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 (민사)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 자체 선임도 가능
 (형사)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 ④ 변호사 선임 등 비용 지출 후 보험사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 공문 사본과 함께 1)보험금 청구서, 2)신분증 사본, 3)비용 지출 증명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 ⑤ 소송의 결과를 공문으로 부처별 공무원 책임보험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보험사에도 공유하여 줍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담당자 연락처('20. 11월 현재)

| 부처 | 연락처 | 부처 | 연락처 |
|-------|--------------|------|--------------|
| 경호처 | 02-770-5561 | 환경부 | 044-201-6226 |
| 방통위 | 02-2110-1343 | 고용부 | 044-202-7796 |
| 국조실 | 044-200-2778 | 여가부 | 02-2100-6046 |
| 총리비서실 | 044-200-2778 | 국토부 | 044-201-3195 |
| 인사처 | 044-201-8017 | 해수부 | 044-200-5087 |
| 법제처 | 044-200-6525 | 중기부 | 042-481-4318 |
| 보훈처 | 044-202-5343 | 국세청 | 044-204-2277 |
| 식약처 | 043-719-1225 | 관세청 | 042-481-7635 |
| 공정위 | 044-200-4200 | 조달청 | 042-724-7024 |
| 금융위 | 02-2100-2766 | 통계청 | 042-481-2023 |
| 권익위 | 044-200-7170 | 대검찰청 | 02-3480-2035 |
| 원안위 | 02-397-7244 | 방사청 | 02-2079-6611 |
| 교육부 | 044-203-6128 | 경찰청 | 02-3150-0336 |
| 외교부 | 02-2100-7065 | 소방청 | 044-205-7412 |
| 통일부 | 02-2100-5642 | 문화재청 | 042-481-4666 |
| 법무부 | 02-2110-3075 | 농진청 | 063-238-0214 |
| 국방부 | 02-748-6628 | 산림청 | 042-481-4012 |
| 행안부 | 044-205-1262 | 특허청 | 042-481-5011 |
| 문체부 | 044-203-2124 | 기상청 | 02-2181-0260 |
| 농식품부 | 044-201-1254 | 새만금청 | 063-733-1054 |
| 산업부 | 044-201-5075 | 해경청 | 032-835-2427 |
| 복지부 | 044-202-2133 | 인권위 | 02-2125-9724 |

유의사항

보험금을 받아 수행한 소송의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여 수행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미 수령한 보험금과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에 따른 소송 지원금과 공무원 책임보험 보험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도 자제합니다.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적극행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경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 7월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의 제한

위 지침의 개정에 따라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구상 대상 사건의 손해가 적극행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적인 이익추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처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제출 시 적극행정 여부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1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 보고 의무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X)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 · 의결하는 경우

A

지급받은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A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변호인(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중복수령 불가)

2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을 받은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 책임보험

A

보장업무의 전임자(퇴직자 포함)라도 소급담보일('20년의 경우 '15.1.1.) 이후 수행한 직무를 이유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A

연중 인사이동으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된 후임자가 보장업무 수행으로 보험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보장합니다.

2

보험기간 전에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당해연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전에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A

다만, 보험기간 이전이라도 소급담보일 이후에 수행한 직무를 이유로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장됩니다.

든든하게 지켜주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안내서

공무원 책임보험

3

배상청구 발생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배상청구 발생 시점은 소장을 받은 시점,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시점, 수사가 개시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

구두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등 배상청구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A

따라서 보험 보장을 위해 보험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험기간 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로 통지 및 사고접수가 완료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사고가 종결될 때 까지 보장합니다.

(예시) '20년 A보험사로부터 1심 관련 보험금 수령, '21년은 B보험사로 낙찰, '21년에 2심과 3심이 진행될 경우 B보험사 아닌 A보험사에서 보장

5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A

공무원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로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6

지원금을 중복수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지침」 또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수령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 아닌 위 지침에 따른 지원금을 소관부서에 반납합니다.



적극행정의 길 –

우리가 걸어온
국민과 약속한

길



함께 걸어가는 적극행정의 길
당신의 곁에서 **동승합니다** 하겠습니다.



든든하게 지켜주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안내서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과 044-201-8501

기획제작 디자인크래프스 02-2267-0663

캘리그래피 효천

이 책의 저작권은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인사혁신처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실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www.mpm.go.kr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12층